파주시 고시 제2025-473호

지적기준점 변경 및 폐기 고시

지적기준점 변경사항(기준점 명칭 변경 및 폐기)을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5년 9월 23일

파 주 시 장

※ 변경 및 폐기 점수 : 지적도근점 11점

구분	기준점명	종선좌표	횡선좌표	소재지	표지재질	조사연월일
	붙	임		참	조	

붙임 지적기준점 (변경 및 폐기)고시목록 1부.